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3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 유사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금액 지침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u>500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태료 금액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 「한국석유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공공기관별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액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별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구 분		과태료 상한액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100만원
	<u>한국석유공사</u>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0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5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천만원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50만원
	한국환경공단	100만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관광공사	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000만원

구 분		과태료 상한액
기타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300만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1천만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는 목적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단체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국민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유사명칭 사용이라는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해소 및 한국석유공사의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 유사 입법례 및 위반행위 방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2019년 2월 법제처는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²⁾을 마련한 바 있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국가정책사업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공사·공단 등의 경우 “1천만원 이상”으로, 다소 공공성은 있으나 사업활동의 범위가 대상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공공성이 약하고 범위와 대상이 한정된 사람의 권익보호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300만원 미만”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4

2)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 유사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금액 지침

□ 상한액 분포 및 특성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수	현 행	58	36	48	78	42	12	274
	2000년 이후	37	21	35	58	39	9	199

- 특수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1천만원 이상, 병원, 혈액원 등 의료기관, 체육회, 교육협의회 등 비영리단체 등 2백만원 이하

□ 고려요소

- (명칭의 종류)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은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해당 명칭이 도용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보다 높게 설정
- (해당 명칭에 대한 관계인 범위) 대국민적 공익사업이나 거래활동을 하는 기관 명칭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구성원 이익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기관보다 높게 설정

□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가정책사업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공사·공단 등의 명칭 ▪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등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기관 명칭 ▪ 금융거래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 명칭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 다소 공공성은 있으나 사업활동의 범위나 대상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공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의 명칭 ▪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명칭이나 자격이 오용되더라도 영향이 적은 기관 명칭 ▪ 전문성이 강하고 일반인의 신뢰도가 높은 개인 자격 명칭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공공성이 약하고 범위와 대상이 한정된 사람의 권익보호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명칭 ▪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명칭이나 자격이 오용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는 기관 명칭 ▪ 일반적인 개인 자격명칭

자료: 「과태료 금액 지침」, 법제처, 2019.2., p.29.